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고정 웹브라우저 제거하기로

연방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윈도우즈XP 안에서 'Shop for Music Online'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Explorer뿐만 아니라 Netscape, Opera, 또는 Mozilla와 같은 다른 제품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명령 준수상황보고서를 발행했다. 'Shop for Music Online'은 소비자들이 소매업자들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음악 C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방법무부가 'Shop for Music Online'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Explorer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이 문제를 MS측과 협의했다. 그러나 MS는 'Shop for Music Onlin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웹브라우저를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제거 조치로 인해, MS가 동의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연방법무부의 우려는 사라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MS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서는 MS가 소비자들 및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생산자들(OEMs)에게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MS의 제품이 아닌 미들웨어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MS의 미들웨어가 아닌 웹브라우저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MS는 2월과 3월에 있을 'Windows Update' 다운로드를 통해 소비자들 이 윈도우즈XP에 타사의 미들웨어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준수상황보고서에 따르면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MS에 대한 동의명령 집행을 위한 특별 고문으로서 Paula Blizzard와 Patricia Brink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독점금지국장에게 직접 MS의 최종 판결 준수상황을 보고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Paula Blizzard와 Patricia Brink는 지난 2002년이래 MS의 동의명령 준수 상황을 감독해 온 검사와 경제학자이다. 독점금지국이 2000년부터 MS의 독점금지 사건에 간여하면서, Blizzard씨는 미 연방정부와 MS간의 분쟁협상 과정에 참가했으며, 최근 3년간 이 일에 몸담아 왔다. 또한 Brink씨는 1989년이래 많은 사건에서 독점금지국을 대표해 왔으며, 부서 내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2002년 8월 5일에 첫 번째 준수상황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연방법무부는 정기적으로 MS의 동의명령 준수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MS가 법원의 최종 판결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

다. 이번이 네 번째 보고서로서, 연방 법무부는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2004. 1. 15. 연방법무부

고철수집업자, 시장분할 및 입찰 담합 혐의로 피소

클리브랜드 연방대배심은 동북 오하이오주에서 파쇄 공급시장을 분할하고, 파쇄 구입에 있어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M. Weingold & Co.(이하 M. Weingold), Harry Rock & Associates Inc.(이하 Rock)와 이들의 소유주 Jack Weingold씨 및 그 고용인 M. Weingold씨와 Loren Margolis씨를 기소했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클리브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들인 M. Weingold사와 Rock사, 그리고 Jack Weingold씨와 Loren Margolis씨는 두 개의 독립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는 1993년 12월경부터 1999년 10월경까지 지속되었고, 다른 하나는 1993년 12월부터 시작되어 1999년 11월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파쇄 시장에서 공급자들을 분할하고 입찰담합을 주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는 미국 사업주들과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반경쟁적 행위를 처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이번 담합 사건은 참가사업자들의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이 파쇄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형사절차를 진행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4건의 사례에서 형사처벌을 한 예가 있었다.

M. Weingold, Rock, Jack Weingold 및 Loren Margolis에 대해 서면법 제1조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이,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35만 달러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04. 1. 15. 연방법무부

인터넷 경매 사기자들에게 대해 유죄 인정

연방지방법원은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있지도 않은 상품을 팔기 위해 ID를 훔쳐서 사용해 온 두 명의 피고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들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로 피고들은 평생동안 인터넷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003년 4월에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이들을 고발함으로써, 일리노이주 검찰당국은 James D. Thompson와 Susan B. Germek를 기소했다.

FTC에 따르면, 1999년 초반 이후 피고들은 인터넷 경매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계정을 개설해 놓고 컴퓨터와 전자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왔다. 피고들은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약속된 제품을 배달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FTC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계정을 바꿔가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1년부터 이들은 자신들에게 입금되는 돈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와 우체국 사서함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개설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과 법집행 당국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 당한 희생자들이 인터넷 경매 사기의 범인인 것으로 오인해 왔었다고 FTC는 말했다. FTC에 의하면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한 자들은 Thompson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자들, Germek씨가 시카고 호텔의 고객 기록부에서 정보를 가져온 자들이었으며,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자들의 이름도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Thompson씨에 대해 앞으로 평생동안 오인을 유발할 만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FTC의 우편규칙(Mail Order Rule)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88,056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Germek씨 역시 5,713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2004. 1. 8. 연방거래위원회

FTC, 신용카드 사기에 대해 조사

연방지방법원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텔레마케팅 사업을 벌여 온 사업자들에 대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의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도 같이 내렸다. FTC는 피고들이 "Royal Credit Solutions", "Imperial Consumer Services" 또는 "Beneficial Client Care"라는 이름으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킴으로서,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전화판매법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피고들의 신용카드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정도의 카드라고 오인하고 이를 발급 받기 위해 미리 수수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TC는 또한 피고들이 소비자들을 속여 은행 계정 정보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Gramm-Leach-Bliley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플로리다 주의 팜비치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3개의 회사들과 그 대표이사들이다. 소장에서 FTC는 이 피고들이 2002년 1월부터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미리 수수료를 받는 신용

카드를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을 해 오면서, 사용한도액이 2,500달러인 카드 발급을 위해 197달러에서 3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피고 회사들의 전화판매원들은 최근에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이나 신용한도액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이들에게 카드 발급을 제의했다고 FTC는 주장했다. 그리고 전화판매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은행계좌번호나 개설자의 성명, 출생일 및 사회보장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도 요구했다. 피고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약속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 명단 등 쓸모 없는 자료들만 발송해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FTC는 피고들의 사기행각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4. 1. 7.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약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 종결기로

FTC는 Genzyme Corporation (이하 Genzyme)이 2001년에 행한 Novazyme Pharmaceuticals, Inc.(이하 Novazyme)에 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기업결합을 할 당시, Novazyme은 최초로 근육질환의 일종인 Pompe병을 치료

하기 위한 효소치료법(ERT)과 관련된 의학연구를 하고 있었다. FTC는 이러한 Pompe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와 진행속도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Pompe병이란 희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치명적인 병으로서 유아와 아동들에게 나타나며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질환이다. Pompe병 환자들의 수는 비교적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병의 치료약은 Orphan Drug Act의 적용을 받는다. 희귀질환자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약을 충분히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3년 Orphan Drug Act을 도입했다. 이 법은 희귀질환 치료약을 개발하는 제약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법에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로는 7년간의 시장 마케팅 독점권을 주고 orphan 약품으로 지정된 후부터 신약신청(NDA)까지의 임상실험에 대해 세금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이번 기업결합 조사와 관련하여 혁신의 문제에 관하여 각각 개인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 중 Timothy J. Muris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가 이번 기업결합

이 아직까지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아 및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의 범위와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어떠한 반경쟁적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편익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Mozelle W. Thompson 위원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쟁과 소비자를 이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혁신자들에게는 강한 신호로 와 닿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장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Thompson 위원은 이번 사건에는 강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혁신사업자들 간의 기업결합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독점을 낳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경우 이는 반경쟁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Pamela Jones Harbour 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종결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위원회는 3-1-1의 표결로 이번 기업결합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2004. 1. 13. 연방거래위원회

EU

유럽제1심법원, 유럽위원회가 Volkswagen에 부과한 제재금을 취소하는 판결

유럽제1심법원, 독일 판매업자에 대한 Volkswagen의 상관행이 위법하다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취소

유럽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자와 딜러 간의 뉴모델의 할인을 금지하고 판매가격을 고정하는 협정을 입증하지 못했다.

1996년과 1997년에 자동차 제조업자인 Volkswagen는 독일의 자사 계열 판매업자에 대해 Volkswagen의 새로운 Passat 시리즈를 추천하면서 권장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을 것과 고객을 상대로 하는 할인 제한 또는 금지를 요구했다.

유럽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의 신고를 기초로 심사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할인으로 인한 판매업자 간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반경쟁적이라고 인정했다. 유럽위원회는 경쟁법에 위반하는 협정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2001년 결정으로 Volkswagen에게 3,096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Volkswagen은 경쟁법 위반이라는 인정에 이론을 주장하여 제1심법원에 제소하고, 특히 판매업자에 대

한 동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며, 양자간에 협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1심법원은 먼저 판례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시한 의향에 대해 소매업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수락을 보이지 않는 한 유럽위원회는 그와 같은 제조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소매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반경쟁적 협정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제1심법원은 그 결과로 유럽위원회는 판매업자가 Volkswagen의 요구를 알아차렸을 때 그 요구를 실제로 수락한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입증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에서는 판매업자는 판매업자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그러한 요구에는 말없이 복종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판매업자에 의해 서명된 판매업자 계약이 EC 경쟁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 때문에 제1심법원의 인정에서는, 유럽위원회의 견해는 경쟁법을 준수한 판매업자 계약에 서명한 판매업자는 서명에 의해 미리 그 이후의 불법적인 계약의 개편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대한 계약의 개편이 예견 가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을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그 후의 계약이 위법한 개편(改變)을 앞질러 받아들이고 있음이 추측된다.

제1심법원은 의사일치의 입증요건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동 견해를 각하였다. Volkswagen의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대리점 계약의 서명을 Volkswagen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사전의 묵시적인 승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떠한 협정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Volkswagen A.G.에 제재금을 부과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2003. 12. 3. 유럽사법재판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년 1월호 발췌

유럽위원회, 수평적합병 가이드라인을 채택

유럽위원회는 금일 경쟁회사 간의 합병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수평적합병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EU에 있어 포괄적인 합병규제개혁의 초석의 하나이고, 유럽 각료이사회에서 이미 합의된 합병규제의 개정과 유럽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된 몇 가지 개선을 보완하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Mario Monti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경쟁회사 간의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 유럽위원회가 채용하는 분석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합병이 규제상의 문제에 직면할지 어떨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상세한 안내를

법조계와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유럽 내에서의 합병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경쟁회사 간 또는 잠재적인 경쟁회사 간의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 유럽위원회가 채용하는 분석적 접근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소위 수평적합병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특히 가격의 상승, 품질의 저하 및 선택의 폭의 감소로 인해 소비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경우만 합병 및 취득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화 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합병심사를 보강하는 실제요건에 관해서 합병규칙 2조에 새로운 문언을 추가했다. 11월 27일 경쟁력각료이사회에서 정치적 인 지지를 얻은 새로운 규칙은 「특히 지배적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함으로써 유효한 경쟁을 현저히 방해하게 된다」는 합병에 대한 행정의 개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경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합병에 대해서는 그 반경쟁적 효과가 단일의 시장지배자의 형성 또는 강화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과점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화 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합병이 집중에 의해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제거하고 중요한 경쟁압력을 배제해 버리거나 잔존기업 간에 의한 조정이 보다 행해지기 쉽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앞으로의 각료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합병규칙은 2004년 5월 1일에 발효하게 되어 있다. 수평적합병 가이드라인은 2001년 12월의 폭넓은 의견모집에 의해 개시된 개혁의 최종 항목이었다. 규칙 및 가이드라인은 동시에 발효할 예정이다.

시장점유율과 효율성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럽위원회가 경쟁상의 문제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유럽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소위 「HHI」에 의해 계속되는 합병후의 시장집중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위원회가 개입 할 가능성은 낮다.

유럽위원회는 평가시 일어날 수 있는 경쟁저해를 감감하는 요소로서 기업의 효율성 향변을 고려할 것도 약속했다. 물론 유럽위원회가 어떠한 효율성의 향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병당사기업은 효율성이 당해 합병과 관련된 것이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 가능한 해약의 초기발견을 줄여줄 수 있는 기타 다른 요소로서는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경우 당해 산업에서 고객이 상당한 「BUYER POWER」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합병이 아니라도 약체화한 경쟁자의 소멸이 발생하고, 합병과 같은, 또는 그것보다도 더 나쁜 반경쟁적 결과가 일어날 경우(「도산기업의 합병」 이론)가 포함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각료이사회가 정식으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 후(금년중 예정) 즉시 공포 된다.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은 이와 동시에 합병심사의 실시에 관한 best practice를 공표할 예정이다. 동 문서는 특히 합병심사절차에 있어서 회합의 시기·투명성 및 적정절차라고 한 것에 관해서 합병사안의 매일 매일의 처리와 유럽위원회와 합병당사기업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배경

합병규칙은 1989년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1990년 12월 21일에 발효했다. 2002년 12월 유럽위원회는 합병규칙 그 자체의 개정을 포함하는, 합병규칙에 관한 포괄적인 개혁패키지를 채택하였다(2002년 12월 11일, IP/02/1856 참조).

이러한 개혁의 다수, 그 중에서도 chief competition economist의 채용, 경쟁총국에 있어서의 합병심사

기능의 분산화 및 심사팀이 내놓은 결론을 「신선한 안목」으로 정밀심사하는 패널의 설치에 이미 실시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도 합병개혁패키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실체요건의 변경 이외에 새로운 합병규칙은 심사기간 뿐만 아니라 합병신고에 관해서도 필요한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동 합병규칙에는 유럽위원회의 강화된 심사권한과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간의 사안의 이관에 관한 합리화된 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에는 처음으로 합병당사회사에게 이관에 관한 의논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사전신고단계에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3. 12. 16. 유럽위원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년 1월호 발췌

EU위원회의, Telenor와 Canal+ 간의 공동행위 허용

EU 위원회는 북유럽 지역에서 Canal+사의 premium pay-TV 채널 위성중계와 관련하여 맺은 노르웨이의 Telenor사, 그 위성TV 플랫폼인 Canal Digital사 및 Canal+ Nordic(이하 Canal+)사와의 일련의 제휴를 허용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경쟁 및 최종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기 및 중기적으로 고려했다. 북유럽 지역의

최종소비자들은 이 지역 위성TV 시장에서 경쟁으로 인한 편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TV서비스와 새로운 기술 발달이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EU위원회의 이번 허가 결정은 북유럽 유료TV 시장내에서의 경쟁을 보장해 줄 것이며, 소비자들은 그 편익을 누릴 것이다”고 Mario Monti 위원은 말했다. 이번 결정은 북유럽 지역 미디어 및 통신사업자인 Telenor사가 Canal+ Nordic와 premium pay-TV 채널의 중계와 관련하여 독점적인 위성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원회에 신고함에 이루어진 것이다. premium pay-TV 채널은 최신 영화 및 인기 스포츠경기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Canal Digital사의 위성TV 플랫폼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전송한다.

Canal Digital사는 원래 Canal+사와 Telenor사의 합작투자회사이다. 2001년에 Canal+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Canal Digital의 지분 50%를 Telenor에 매각하면서, 이와 동시에 pay-TV 서비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고한 바와 같은 내용의 독점적 중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에 위원회에 신고된 이 협정이 특히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인 합의라면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제휴기

간을 단축한 후, 위원회는 독점적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의해 대체적으로 상쇄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Canal+과 Canal Digital간 제한된 기간 동안의 협력은 북유럽내 제2위 위성 pay-TV 중계업자인 MTG/Viasat와의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도록 해주며,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북유럽 지역에서의 pay-TV 부문에서 잠재적 경쟁자에 의한 신규 시장진입도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북유럽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역을 통한 pay-TV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들은 궁극적으로 경쟁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발달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한다. 더욱이 EU위원회에서 이 제휴협정을 허용함으로써, Telenor, Canal Digital 및 Canal+은 자신들이 pay-TV사업에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에 EU경쟁법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인정 기간은 5년이다.

2004. 1. 5. EU위원회

EU위원회, 프랑스계 그룹의 출판사업부문 인수 허용

EU위원회는 프랑스계 그룹인 Lagardere가 Editis사(Vivendi Universal Publishing 또는 VUP

로 잘 알려져 있음)의 출판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인수로 인해 불어 사용 서점과 관련된 시장들, 즉 판권, 마케팅 및 유통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거나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Lagardere가 Editis의 사업 중에서 일부는 남겨두기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상의 요건들이 충족된 것이다.

Editis는 현재 불어 사용 서적의 출판, 마케팅 및 유통 분야에서 선두 사업자이다. Lagardere는 자신의 계열사인 Hachette Livre를 통해 시장에서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그룹은 또한 도서 소매, 방송 및 신문발행·유통사업도 하고 있다.

유럽 및 남미에서 전체 Editis 출판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굉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그룹이 탄생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사의 시장지배력과 비교하더라도 무려 7배나 차이가 난다. 위원회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수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사업체는 출판업자들에게 이윤을 주는 유명작자의 작품에 대한 출판과 매년 정해진 비율 이상을 출판하여 판매하는 직판 형태의 판매방식을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새로운 업체는 문고판 서적의 출판, 마케팅 및 유통도 지배할 것이어서, 결국 기타 독립 출판사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주변부로 밀려나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게 되는 반면, 이 그룹은 전체 서점 체인을 통한

하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판권들을 보유하여 서점 진열장의 대부분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불어 사용 서적 출판업 및 관련 분야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위원회의 이와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Lagardere 그룹은 Editis의 사업부문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전체 사업 중 약 40%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더 이상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2004. 1. 7. EU위원회

일본

오오츠카 화학 주식회사와 미츠비시 가스화학 주식회사에 의한 가수(水)히드라진사업의 통합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당사 회사인 오오츠카 화학 주식회사(이하 오오츠카 화학) 및 미츠비시 가스화학 주식회사(이하 미츠비시 가스 화학)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가수(加水)히드라진 사업 부문의 통합에 대해 사전 상담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히드라진이란 알칼리성의 무기 화

합물로서 상온에서는 액체이며, 강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물과의 친화성이 높고, 통상적으로 히드라진과 물을 혼합한 가수히드라진으로서 유통되고 있다. 가수히드라진은 합성수지 등의 발포제, 공기 조절 설비나 보일러의 순환수 처리제, 금속환원제, 의·농약 중간체 등에 이용되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상담을 신청한 당사회사의 설명을 전제로 하여, 이들의 주장이 진실한 경우 이번 사업 통합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공취위는 「기업결합 계획에 관한 사전 상담에 대한 대응방침」(2002년 12월 11일)에 근거하여 서면심사와 함께 상세심사를 실시한 후, 그 심사결과를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건의 개요

오오츠카 화학 및 미츠비시 가스 화학은 올해 중 당사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 가수히드라진의 제조·판매와 관련되는 부문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독점금지법에 따른 고려사항

(1) 일정한 거래분야

소비자의 측면에서 기능과 효용이 동등인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가수히드라진의 제조·판매 분야 전체를 본 건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래분야로 확정했다.

(2) 독점금지법상의 평가

수입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수입품의 구매가 쉽고, 소비자는 수입을 포함하여 거래처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업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동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 그리고 당사회사가 신청한 정보차단조치가 유효하게 기능하면 각각의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사회사가 신청한 주된 대응책

첫째로, 당사회사는 당사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가수히드라진 판매업자가 통합 회사와 가수히드라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구입처 및 거래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로, 통합 회사가 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수히드라진의 매매가격은 제조원가를 기본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정한다.

셋째로, 일정한 지역에서 가수히드라진 판매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오오츠카 화학과 미츠비시 가스 화학의 자회사와의 사이에 판매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결론

이상으로부터 공정취인위원회는 본 건 통합으로 가수히드라진의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2004. 1. 9. 공정취인위원회

독점금지법 개정방향 공표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28일 독점금지법의 조치 체계 및 독·과점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독점금지법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하여 이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비함과 동시에, 동 보고서에 대한 제언 및 제출된 의견(38개 단체, 40개 사업자, 34명의 개인, 합계 112건)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기본적 방향을 공표했다.

제1절 과징금 제도의 재검토

1. 과징금 산정율의 인상

(1) 카르텔·입찰담합 등의 위반행위 방지라고 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로서 위반행위에 의한 경제적 이득 상당액을 국가가 징수하는 현행의 구조를 고쳐서, 부당이득 상당액 이상의 금전을 징수하는 구조로 한다. 즉, 현행 과징금 산정율(현행은 원칙적으로 대기업 6%, 중소기업 3%)을 인상한다.

(2)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 과징금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2. 과징금 적용대상 행위의 확대

현행의 대상 행위(대가와 관련되는 또는 실질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가에 영향이 있는 부당한 거래 제한)를 고쳐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한다.

- (1) 대가, 공급량, 시장점유율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 (2)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 (3) 구입 카르텔

제2절 조치감면제도의 도입

다음의 법정 요건에 해당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한다.

- 1.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자료 제출 등을 했을 경우
- 2.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반행위에 서 이탈했을 경우 등

제3절 범칙 조사 권한의 도입 및 벌칙 규정의 재검토

- 1. 현행의 행정조사(간접 강제 조사) 권한에 추가하여 형사고발을 위한 범칙 조사 권한을 도입한다.
- 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도교고등법원 전속관할제도를 폐지하는 등 형사고발 관련 수속을 재검토한다.
- 3. 행정조사와 관련된 벌칙 및 배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을 강화한다.

제4절 심판 수속 등의 재검토

적정 수속의 보장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정 정비를 실시한다.

제5절 독·과점 규제의 재검토

1.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 규정의 재검토

현행의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 규정(가격의 허방 경직성, 과도한 이익률 등의 폐해가 있는 경우 기업분할 등의 조치를 취한다)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필수설비 등의 이용에 있어서 신규 참가자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속·효과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한다.

(1) 특정사업자란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정한 시장지배적 점유율을 가지고 필수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한다.

(2) 금지되는 행위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필수설비 등의 이용 거부·차별 등으로 한다.

(3) 필수설비 등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정취인위원회가 지정한다.

- ①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시설 등(기술정보도 포함)인 것

② 신규 참가자 등이 동등의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

(4) 필수설비 등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주주관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사업법과의 조정에 대해 검토한다.

2.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 징수 규정의 재검토

현행의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대한 보고 징수 규정을 폐지한다.

2003. 12. 24. 공정취인위원회